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1243 |
|----------|-------|

발의연월일 : 2025. 7. 3.

발 의 자 : 성일종 · 백종현 · 안상훈  
인요한 · 김석기 · 이종배  
고동진 · 박덕흠 · 김장겸  
김미애 · 최은석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해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자로 한정하고, 제대군인의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 간호장교를 양성하는 국군간호사관학교가 사관생도 입학에 엄격한 나이 제한을 두어 지원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저출산 ·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등에 따라 사관생도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

이에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자격을 현행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개정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향후 우수한 병역자원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법률 제 호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본문 중 “21세”를 “23세”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입학자격)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제3조(입학자격) -----<br>-----<br>-----.                                       |
| 1. 17세 이상 <u>21세</u> 미만으로서 미혼일 것. 다만,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 1. ----- <u>23세</u> -----<br>-----.<br>-----<br>-----<br>-----<br>-----.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